

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인원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철흠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8월 28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9일

3. 개정이유

- 인권보호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며,
-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인권보호관의 설치·운영 (안 제18조)
- 인권센터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(안 제19조)
-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기여 → 이바지, 손상하여 → 떨어뜨려, 권고 → 요구, 없는 한 → 없으면, 수립하여야 → 세워야, 개최하거나 → 열거나, 자 → 사람 등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인권보호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

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이 존중되는
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법률전문가 및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인
권보호에 대한 상담·조사·구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
으며, 인권구제업무 결과에 대한 신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
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